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0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1. 개정이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3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청년의 범위 및 지원 중단 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를 위해 행정정보망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항목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설정 (안 제5조의2제2항)

창업우대 지원대상인 (예비)청년창업자의 범위를 만 39세 이하로 규정함

나. 부담금면제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감축(안 29조의2제2항)

창업확인을 위해 행정정보망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항목에서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

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중단기간 설정 (안 제31조의3)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2)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1차 시정명령,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만39세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3제1항”을 “법제39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지원중단 기간의 설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

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창업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3조 제3항 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법 제43조 제3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별표4]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의 지원중단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창업보육센터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법 제43조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다.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법 제43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법 제43조제4항제4호	지정취소		
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43조제4항제5호	시정명령	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생략)</p> <p>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사업의 내용</p> <p>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p> <p>3. 사업성과의 활용</p> <p>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p>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제39조의3제2항—

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한다)

③·④ (생략)

<신설>

_____.

1. 2.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2.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지원중단 기간의 설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중소

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기간
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09